

워크숍 자료집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2차 워크숍-

2016. 8. 18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워크숍 자료집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제 2 차 워크숍 -**

2016. 8. 18.

일 정

1. 일 시 : 2016. 8. 18(목) 10:30~15:00
2. 장 소 : 엘타워 5층 지니아홀(서울시 서초구)
3. 주 제 :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된 주요 법제에 대한 분석
및 검토
4. 일정 및 발표주제와 발표자/토론자

일 정	발표주제
10:30~12:10	<p>[제1주제] 연구개발특구 등 산업 클러스터 유사 법제에 대한 분석 발표 :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제2주제] 산업 클러스터와 산업 진흥 관련 주요 법 체계에 대한 법적 분석 발표 :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p>
12:00-13:30	<p>[종합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완규 교수(용인송담대학교) - 김승중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 원소연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 석호영 연구원(한국법제발전연구소) - 양윤석 박사(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이민아 연구원(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박종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3:30~15:00	만찬

- * 사회자 : 박종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 회의지원 : 박서희(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조원)

목 차

제1주제: 연구개발특구 등 산업 클러스터 유사 법제에
대한 분석 (문병효) 9

제2주제: 산업 클러스터와 산업 진흥 관련 주요 법체계에
대한 법적 분석 (임 현) 29

제 1 주제

연구개발특구 등 산업 클러스터 유사 법제에 대한 분석

문병호(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 다수의 클러스터 특별법
- 클러스터, 특구, 산업집적 등 다양한 개념
- 클러스터 지역으로 선정되면 각종 잇점이 있음.
- 산학연 연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

클러스터의 장단점

- 클러스터 지역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특히 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등의 특혜를 받게 됨.
- 산학연의 연계로 상호 발전, 물류비 등 비용절감
-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생산구조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을 균형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간 경쟁구조, 중앙집중의 문제, 실패할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 부패의 우려 등.

II. 클러스터 특별법의 사례들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클러스터 관련 특별법의 공통적인 구조

- 목적과 개념정의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특구의 지정, 입지선정 등
- 행재정적 지원수단들
- 규제완화 특례들
- 추진체계 - 위원회 등
- 벌칙 등

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목적과 개념

-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4장(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4.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
5. 자원조달계획
6. 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6조 입지 선정 요건: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5. 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6.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①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11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
-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 제13조(융자지원)
- 제14조(세제지원)
- 제15조(입주지원) 임대료 감면 등
-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제18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제19조(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4) 규제완화

-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5) 위원회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 심의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

• 심의사항 :

• 구성 및 운영 :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

• 지원기구를 둘 수 있음.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목적과 개념

-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 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 지구의 지정 등

-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3) 기초연구환경 구축

-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 사업, 임원, 이사회 등
-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의 출연 가능
- 제23조(무상 대부 등) 무상양여나 대부가능
-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거점지구에 설립.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비용 일부부담하는 구조. 정부출연금으로 충당

(4) 비즈니스 환경 구축

• 각종 특례들: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제30조(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제31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33조(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교류·협력체계 구축)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35조(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지원본부 및 전문지원기관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5) 국제적인 생활환경 구축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사증발급, 체류기간 등

제3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3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제44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제4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거점구역에 들 수 있음.

(6) 기타

-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또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업무위탁
-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9조 제2항 4호: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추진체계 - 위원회

-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
-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지원
-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목적과 개념

-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특구의 지정 등

-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구지정절차 :
 1.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 특구의 지정요건: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 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2) 특구의 지정 등

- 제4조 특구지정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제도적 기반
-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특구안에 있는 기관
-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 제15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4) 특구운영성과의 확산

-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 특구 안과 밖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산학연 협력체계

(5)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여건개선

-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까지 해결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1.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29조(허가등의 의제) : 무려 29개 법률에 규정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착수) 사업승인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
-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혁신 도시, 산업단지의 경우 해당법률에 따름
- 제31조(토지수용)
- 제32조(준공검사)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사업시행자가 부담. 단 보조가능

(7) 특구의 관리

-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4호 :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 제37조(입주승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6개월 이내 입주승인
-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입주승인을 받지않거나 취소된 자
-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건폐율, 용적률 특례
-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가격안정 조치를 취해야 함

(8) 추진체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제46조)
- 사업, 임원
-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재단의 이익과 반대되는 사항
- 제54조(이사회)
- 제58조(자금의 조달)
-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61조(결산보고)
-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Ⅲ. 산업클러스터 관련 특별법의 논점들 - 논리와 체계

- 체계정합성의 문제 -일관성과 체계 혼란의 문제, 클러스터에 관한 각종 특별법의 예외 및 특례조항
- 특구 등 클러스터에 대한 규제완화의 문제 - 필요성은 인정하나 규제 완화로 인하여 체계 혼란
- 클러스터에 대한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의 문제 -세제감면, 보조금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입주기업의 이윤을 보장
- 추진체계의 문제 -추진주체로서 위원회나 진흥재단의 구성과 업무 등

Ⅲ. 산업클러스터 관련 특별법의 논점들 - 논리와 체계정합성의 문제

- 불확정개념과 백지위임의 문제 -자의가 개입하거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음.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문제 - 지역 간 경쟁 심화를 통한 중앙집중화, 지역 간 경쟁, 혁신도시 경쟁에서 선정된 도시와 선정되지 않은 도시간 격차심화 우려. 혁신도시 등 특구의 효과가 외부에 미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역배분과 자원배분을 할 필요가 있음.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이 더 유리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의 부족 : 단기적,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고 방지책 필요
- 기타

IV. 결 론

- 클러스터에 관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집중적인 지원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체적인 체계정합성의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

감사합니다!

제 2 주 제

산업 클러스터와 산업 진흥 관련 주요 법체계에 대한 법적 분석

2016. 8. 18.
임 현

검토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목적(제1조)

: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연혁 및 제·개정취지

: 1990년 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200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됨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복잡다기한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을 통합·개편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2002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까지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입지규제의 완화 등이 중요한
개정방향이었음

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연혁 및 제·개정취지

: 2002년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과 연계가 증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 확충 등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개정의 이유로 삼았음
이후 15회의 개정이 이루어짐

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의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의 입지
제3장 공장의 설립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제5장의3 한국산업단지공단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클러스터 관련 주요 내용

-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과 지원
- 산학융합지구의 지정과 지원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제3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도시·군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과 지원 (제22조)

: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과 지원
(제23조)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
기술기반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등의 우선지원,
부담금과 지방세의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의 허용,
신용보증 등의 지원

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학융합지구의 지정과 지원
(제22조의 4, 제22조의 5)

: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
여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
청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
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있음

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

(제22조의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함

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3의2.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
4. 사업추진체계 및 자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II.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목적(제1조)

: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II.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연혁 및 제정취지

: 1998년 제정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동 단지의 조성·운영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금·인력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취지로 제정됨 이후 현재까지 10회의 개정을 거침

II.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법률의 구성과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등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제6장 보칙

II.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단지(제2조)

- :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
-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 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 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 바. 신기술의 보호·육성 및 창업
 -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 아. 시험생산
 - 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II.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제3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함

Ⅲ.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목적(제1조)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Ⅲ.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연혁 및 제정취지

: 1990년 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공업입지 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화되어 있어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중
일부를 통합·개편하여 종합적인 공업입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입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음
제5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Ⅲ.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법률의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제7장 보칙

Ⅲ.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클러스터 관련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Ⅲ.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제2조)

: 물류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Ⅲ.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제39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Ⅲ.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육성을 위한 지원
(제46조 이하)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자금지원

Ⅳ.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목적(제1조)

：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

IV.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연혁 및 제•개정취지

: 1963년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을 근간으로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거쳐 201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됨
산업교육진흥법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기술계 인적자원의 양적 확보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자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IV.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연혁 및 제•개정취지

: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고, 정부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위한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체·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삼음

IV.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의 구성과 주요 내용

- : 제1장 총칙

-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 제3장 삭제

-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 제6장 보칙

IV.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과 산업교육기관(제2조)

- : 산업교육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뜻함

- 산업교육기관은 다음의 학교를 의미함

-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 다. 대학

IV.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학연협력(제2조)

: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의 활동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IV.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학연협력지주회사(제2조)

: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V. 산업 클러스터 및 산업진흥 관련 국내 주요 법체계에 관한 논의의 쟁점

- 다양한 관련법제와의 정합성
- 입법의 과잉과 입법의 공백
- 지원정책의 실효성
- 지원조치의 법률유보- 행정작용법적 측면